

직제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제12장에 의하여 본교의 조직 및 구성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행정의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교의 직제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기타 본교의 각종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조 직

제 1 절 기 구

제3조 (기구)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본교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1. 총장 직속 기구
2. 위원회
3. 대학본부
4. 대학 및 대학원
5. 부속기관
6. 부속교육기관
7. 부설연구기관

제 2 절 총 장

제4조 (총장)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제5조 (총장직속기구) ① 총장직속기구로 교목실, 비서실 비서팀, 인권센터를 둔다.

② 교목실에 실장을, 인권센터에 센터장을, 비서실 비서팀에 팀장을 둔다.

③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 교무위원회, 교수회를 두며, 기구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 ① 총장은 대학 운영의 중요 사항의 심의 자문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별 기능·구성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3 절 대학본부

제7조 (대학본부) ① 대학본부에 교무처, 학생처, 사무처, 기획처, 입학처, 교육혁신단, 국제교류단,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제1항의 각 처 및 단에는 처장 및 단장을 두며, 사무처에는 부처장을 둔다.

③ 대학본부의 처 및 단의 하부조직으로 원, 팀, 센터를 두고, 원장, 팀장, 센터장을 둘 수 있다.

제8조 (교무처) 교무처에 교무팀, 학사지원팀, 연구실안전관리센터를 둔다.

제9조 (학생처) 학생처에 학생지원팀,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 학생상담센터, 취업경력개발팀을 둔다.

제10조 (사무처) 사무처에 총무인사팀, 시설관재팀, 재무팀을 둔다.

제11조 (기획처) 기획처에 경영기획팀, 전략평가팀, 성과환류데이터센터, 대외협력팀, 정보전산원 정보전산팀을 둔다.

제12조 (입학처) ① 입학처에 입학팀을 둔다.

② 입학처에 교수사정관을 둔다.

제13조 (교육혁신단) ① 교육혁신단에 교육혁신팀, 교수·학습센터, SI교육센터, 이러닝MOOC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소프트웨어중심대학추진사업단 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를 둔다.

② 교육혁신단에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4조 (국제교류단) 국제교류단에 국제교류팀, 외국인지원센터, 한국어교육센터를 둔다.

제15조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에 산학기획팀, 산학감사팀, 연구진흥팀, 창업보육센터, 창업교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협력AI1SET센터를 둔다.

제16조 (한시과업조직) ① 총장은 교육·연구진흥과 학교발전에 필요한 경우, 대학본부의 하부조직 외에 한시 과업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한시 과업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4 절 대학 및 대학원

제17조 (대학 및 대학원) ① 대학에 교양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미래산업융합대학, 아트앤디자인스쿨, 자율전공학부, 평생교육원을 둔다.

② 대학원에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휴먼서비스대학원을 둔다.

③ 대학 및 대학원에 학칙에 규정된 학부(과) 및 전공을 둔다.

④ 대학 및 대학원의 하부조직으로 부, 팀 또는 실을 두고, 부장, 팀장 또는 실장을 둘 수 있다.

제18조 (교양대학) ① 교양대학에 학장을 둔다.

② 교양대학에 교학팀, 교양교육부, 바롬인성교육부, 교직지원센터, 인터넷윤리센터를 둔다.

제19조 (단과대학) ①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둔다.

② 각 단과대학의 학부(과) 및 전공에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제20조 (아트앤디자인스쿨) ① 아트앤디자인스쿨에 학부장을 둔다.

② 아트앤디자인스쿨의 각 전공에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제21조 (자율전공학부) 자율전공학부에 학부장을 둔다.

제22조 (평생교육원) ① 평생교육원에 원장을 둔다.

②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팀을 둔다.

제23조 (대학원) ① 각 대학원에 원장을 둔다.

② 각 대학원의 학부(과) 및 전공에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에 교학팀을 둔다.

제 5 절 부속기관·부속교육기관·부설연구기관

제24조 (부속시설) ① 부속시설로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을 둔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둔다.

③ 부속시설의 하부조직으로 팀 또는 실을 두고, 팀장 또는 실장을 둘 수 있다.

제25조 (부속기관) ① 부속기관으로 도서관, 기숙사, 박물관, 학보사, 방송국, 대학교회, 에코 캠퍼스추진사업단을 둔다.

② 도서관에 학술정보팀을 둔다.

③ 기숙사에 행정실을 둔다.

④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6조 (부속교육기관) ① 부속교육기관으로 정보보호영재교육원, 한국생태학교를 둔다.

② 부속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7조 (부설연구기관) ① 부설연구기관으로 바롬인성교육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미래산업융합연구소, 조형연구소, 여성연구소, 아동연구원을 둔다.

② 부설연구기관에 특정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③ 부설연구기관 및 특정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3 장 구 성 원

제28조 (교직원) 본교의 교직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

② 직원 : 일반직·기술직·기능직으로 구분하며 직원의 총 정원은 학교법인 정의학원 정관의 [별표 2]와 같이 하되, 일반직·기술직·기능직의 직급별 직위는 다음과 같다.

1. 4급 이상 : 부장

2. 5급 : 차장

3. 6급 : 과장

4. 7급 : 계장

5. 8급 이하 : 직원

③ 조교 : 교육조교, 학사조교

④ 교직원 외에 필요에 따라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29조 (보직 및 임기) ① 대학, 대학원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처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2급으로, 사무부처장은 4급 이상으로, 단장, 부장, 실장, 원장,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단, 교목실장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임교수로 임면할 수 있다.

③ 대학 및 대학원의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교수는 총장이 임면한다.

④ 팀장, 교학실장, 행정실장은 6급 이상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⑤ 본교 보직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단,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 4 장 사 무 분 장

제30조 (사무분장) 본교 각 직제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면개정<'94 제9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②항 개정 <'94 제18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제7조 ③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삽입, 제10조 ②항 개정 <'96 제17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④항, 제8조 ①②항, 제11,12조, 제18조 개정 <'97 제18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 8, 9, 10조 개정, 제13조 내지 제19호를 제11조 내지 제17조로 한다. <'99 제2차 교무위원회>), (제6조 ②항 개정 <'99 제15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 6, 7, 8, 9, 10조 개정, 제12조 신설 <'99 제21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구표 형태 전면 수정 <'00 제20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기구표 개정 <'02 제3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의2, 제10조의2 및 제12조의2 신설, 제7조 제2항, 제9조 제2항 및 기구표 개정 <'02 제20차 교무위원회>) 단, 제9조의 제2항, 제10조의2 및 제12조의2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및 기구표 개정 <'03 제19차 교무위원회>, 제5조의3 신설 <'04 제17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기구표 개정 <'04 제5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8조 제2항 및 기구표 개정 <'04 제20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 개정 <'05 제4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개정 <'06 제30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기구표 개정 <'05 제27차 교무위원회, '06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기구표 개정 <'07 제1차 교무위원회, '07 제6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제2항 및 기구표 개정, 제12조의3 신설 <'07 제20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제2항 및 기구표 개정, 제13조 제2항 개정 <'07 제28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제2항 개정 <'08 제12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별표1) 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개정, 제12조의2 삭제, 제12조의4, 제12조의5, 13조, 제15조, 제16조 개정 <'09 제4차 대학평의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개정 <'09 제21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기구표 개정 <'09 제30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기구표 개정 <2010 제4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의2 개정 <2010 제7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기구표 개정 <2010 제7, 8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기구표 개정 <2010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의2 ③항, 기구표 개정 <2010 제15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1, 12조, 기구표 개정 <2010 제17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기구표 개정 <2010 제21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기구표 개정 <2010 제24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기구표 개정 <2010 제29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기구표 개정 <2010 제34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제2항, 제12조의4제1항및제2항, 제13조제2항, [별표 1] 기구표 개정 <2011 제2차 교무위원회>)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5조제1항 개정 <2011 제2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기구표 개정 <2011 제3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기구표 개정 <2011 제4차 교무

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제2항 개정 <2011 제8차 교무위원회>)
- (2) 단, 제3조제9호, 제12조의6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기구표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기구표 개정 <2011 제9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의4 신설, 제7조제2항,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11조, 제12조의3 삭제, [별표 1] 개정 <2011 제20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서양화과를 현대미술과로 개정 <2012 제2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8조제2항, 별표 1 개정 <2012 제7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16조제1항 개정, 동조제3항 신설 <2012 제8차 교무위원회>)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교수업적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임강사” 를 “조교수” 로 한다.

② 비전임교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 중 “전임강사” 를 “조교수” 로 한다.

제43조 중 “전임강사” 를 “조교수” 로 한다.

③ 명예퇴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임강사” 를 “조교수” 로 한다.

④ 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호 해당직급란 중 “전임강사” 를 삭제한다.

⑤ 학술활동장려금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임강사” 를 “조교수” 로 한다.

⑥ 도서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교수 비교란 중 “전임강사” 를 “조교수” 로 한다.

- ⑦ 학보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⑧ 서울여대교육방송국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12조제2항, 별표 1 개정 <2013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의5 신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15조제1항 삭제, 별표 1 개정 <2013 제1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의3, 제5조의4, 별표1 개정 <2013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의2, 별표1 개정 <2014 제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의2제3항은 8월 1일부터, 표1은 8월 25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별표1 개정 <2014 제10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4 제17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9호, 제12조의6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개정,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5를 제12조의7,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3으로 변경, 제12조의5를 제15조의2로 변경, 제12조의4, 제12조의6 삭제, 제13조의4 신설, 별표1 개정 <2015 제1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의8제2항, 제13조의4제2항, 별표1 개정 <2015 제19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의류학과 명칭 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5 제2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④항 신설 <2015 제25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의8 제2항, 별표1 개정, 제15조의2 제3항 신설 <2016 제10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6 제1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제2항 개정, 제12조의8 제3항 신설, 별표1 개정 <2017 제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의2 제3항, 별표1 개정 <2017 제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제2항, 제12조의7 제1항 및 제2항, 제13조의3 제2항, 제13조의4 제2항, 제15조의2 제2항, 별표1 개정 <2017 제2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8 제14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의2 삭제, 제12조의8 제2항, 제13조의4 제2항, 별표1 개정 <2019 제7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 신설,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0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 제12조의8 제1항 내지 제2항, 제13조의2 제2항 개정, 제13조의2 제3항 삭제, 제13조의4 제2항 개정, 제15조의3 신설<2019 제1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제3항 개정 <2020 제1차 교무위원회>)

(적용례)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임용 중인 연구조교는 임용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 [별표1] 개정 <2020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면 개정 <2020 제15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별표1] 개정 <2020 제2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제2항 개정 <2020 제27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제2항, [별표 1] 개정 <2020 제31차 교무위원회>)

〔별표 1〕 기구표



